

사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번호 제9호 2002. 2. 26)

총무위원회
2002. 3. 15(금)

1. 심사경과

- 가. 2002. 2. 26 사천시장 제출
- 나. 2002. 2. 26 총무위원회 회부
- 다. 2002. 3. 13 사천시의회 제6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

2. 제안설명요지(세무과장 김영태)

가. 제안이유

- 감면조례 설치 목적의 내용 보완과 감면규정의 명확화 및 감면 기간의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 부여에 따라 감면 기간 조정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기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1)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 보완(안 제1조)
- (2)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4조)
- (3)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등록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경감 규정 신설(안 제9조)
- (4)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1999. 3. 27)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안 제12조)
- (5)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기간을 7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안 제22조)
- (6)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조문의 명확화(안 제25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명돈)

-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 개정과 삭제로 관련조문 정리, 관계법에 따른 조문 신설, 외국인 투자기업의 감면기간 조정으로 인한 외국인 기업유치 촉진 유도 등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 없음